●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44호

젊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34호, 2024. 08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31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셌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) 제1조 및 2조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) 제2조 및 3조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) 제2조 및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게 저

٥ŀ

| <u> </u> | 계 경 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 유독물 |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 유독물 |
| 질의 지정고시 부칙 | 질의 지정고시 부칙 |
| E-1 104 1 1 1 | 21 1021 11 |
|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| 제1조(시행일) |
|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고시 | |
|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 | |
| 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 제13조(유 | |
| 해화학물질 취급기준), 제23조(화학사고 | |
|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는 고시 | |
|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, 같 | |
| 은 법 제24조(취급시설의 배치・설치 및 | |
| 관리 기준 등) 및 제28조(유해화학물질 | |
| 영업허가)는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적용 | <u>2025년 8월 7일</u> |
| 한다. | |
| 제2조(경과조치)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, | 제2조(경과조치) |
|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| |
|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 | |
|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| |
|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| 자(화관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대하여는 |
|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| 2025년 8월 7일 이전부터 취급한 자를 |
|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| <u> 포함한다)는</u> |
| |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| 5 |
| 영업허가: <u>2025년 1월 1일</u> | : <u>2026년 7월 1일</u> |
| 6.·7. (생 략) | 6.·7. (현행과 같음) |
| | |
| | |
|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 유독물 |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 유독물 |
| 질의 지정고시 부칙 | 질의 지정고시 부칙 |
|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 | 제2조(적용례) |
| 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| |
| 한다)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 | |
| 법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| |
|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 | |
| 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 | |
| 한 사항은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적용한 | <u>2025년 8월 7일</u> |
| 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 | 제3조(경과조치) |
| 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 | |
| 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 | |
| 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| <u>자(화관법 제24조 및 제2</u> |
|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| 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 |
|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| 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)는 |
| 다.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| |
| 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| 5 |
| 영업허가: <u>2026년 1월 1일</u> | : <u>2026년 7월 1일</u> |
| | |
| 6. · 7. (생 략) | 6. • 7. (현행과 같음) |
| |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 유독물질 |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 유독물질 |
| 의 지정고시 부칙 | 의 지정고시 부칙 |
| | |
|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 | 제2조(적용례) |
| 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| |
| 한다)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 | |
| 법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| |
|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 | |
| 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 | |
| 한 사항은 <u>2025년 1월 1일</u> 부터 적용한 | <u>2025년 8월 7일</u> |
| 다. | |
| 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 | 제3조(경과조치) |
| 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 | |
| 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 | |
| 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| <u>자(화관법 제24조 및 제2</u> |
|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| 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 |
|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| 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)는 |
| 다. | |
| 1. ~ 7. (생 략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| |
| | |
| | |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